

2024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『'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8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-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

2. 지원자격

-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,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(300인 미만 우선지원)
-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

3. 참여제한

-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(이하 “융자금 지원사업”)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

<참여 제한 사유>

- ▶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- ▶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휴·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▶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(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에도 적용)
- ▶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
- ▶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
- ※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www.sims.go.kr>)에서 지원합계 확인
- ▶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
- ※ 단,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
- ▶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(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)
- ▶ 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
- ▶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·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

4. 지원내용

□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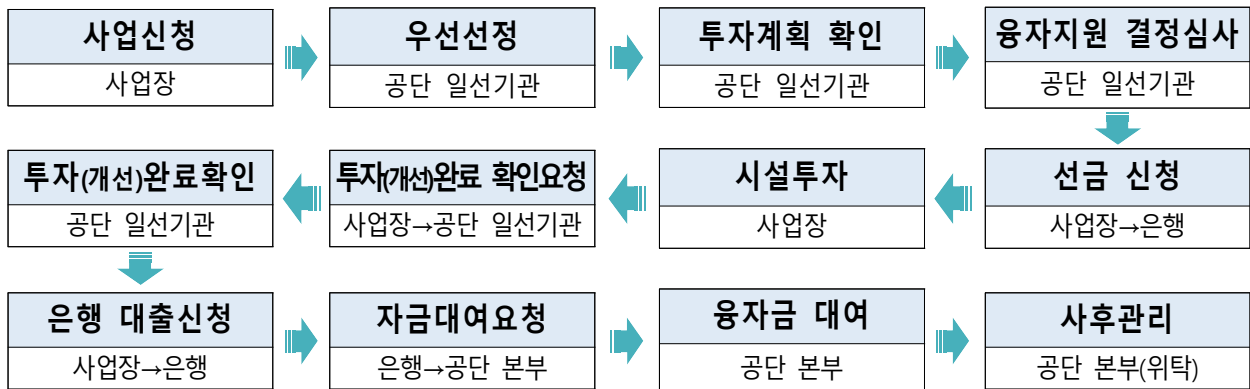
구분	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		
지원금액 (지원한도)	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(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)		
지원품목	① 위험기계·기구(부속품 포함)·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②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(진단·점검·컨설팅)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		
지원조건	금리(고정) 연리 100분의 1.5	거치기간 3년	상환기간 7년
비고	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(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) ※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 ②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※ 단,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 이후 신청 가능		

<주요 지원 품목>

- ▶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
※ (주요설비) CNC공작기계(머시닝센터), 프레스, 크레인, 사출성형기, 산업용로봇 등
- ▶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
- ▶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
- ▶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
- ▶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·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, 휴게시설 등

□ 지원절차

- 공단 일선기관별 “용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”을 적용하여 용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<별첨> 참조

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4. 1. 18.(목) ~ (예산 소진 시 까지)
- (신청방법)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 - (신청경로) 홈페이지 접속 → 참여사업장 로그인 → 신규사업신청 → “산재예방시설 용자” 선택
 - (안전동행 지원사업 연계)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위험공정 개선 시 자부담금에 대한 용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(반드시 해당 사업의 결정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)
- (신청문의) 용자금 지원사업 **대표번호 1544-3088**(관할지역 자동연결)
 - ※ 세부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는 홈페이지(알림마당-서식모음 및 자료실) 참조

6. 취소사항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융자금 지원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함

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>

- 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- ▶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
- ▶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▶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
- ▶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- ▶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▶ 그 밖에 「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 규칙」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
<덧붙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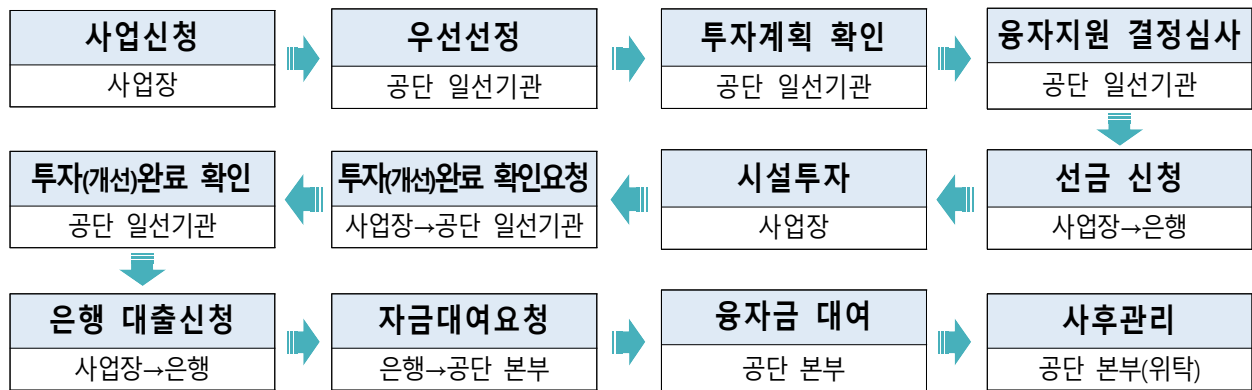
2024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세부 공고

1. 우선선정 기준

- '24년도 전체 예산*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<별첨> 참조
 - (우선선정) 신청 사업장의 유해·위험 정도, 규모 등 개선이 시급한 순으로 우선선정 점수가 부여되어 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
 - (최우선고려) ①산재 취약 업종(건설업 등), ②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에 참여한 사외하청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, ③소액 융자 신청 사업장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점수 부여

* 전체 4,586억원으로 공단 7개 권역별 상·하반기 예산 별도 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일선기관 또는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조

2. 사업절차 및 방법



가. 사업신청(사업장)

-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(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)
 - ※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은행을 통해 대출예정확인서 발급
 - (온라인)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
- * (온라인신청) 클린사업 홈페이지 > 참여사업장 로그인 > 신규사업신청 > “산재예방시설 융자” 선택

- (오프라인)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신청 관련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관할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사업 신청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, 지원결정 후 투자완료 시 컨설팅 보고서 제출 필요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기 실시('22~'23년)된 경우 당시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('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불요)

※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것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

- ① '24년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(위탁) 사업장
- ② KOSHA-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(인증기간 내)
- ③ '23년까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(공단 또는 위탁)을 지원받은 사업장

나. 우선선정(공단 일선기관)

- 사업장별 신청정보, 관련증빙을 참고하여 점수를 기반으로 우선선정
- 매 선정마다 신청 시작일로부터 해당 선정일자까지 접수된 건을 취합하여 선정(상반기 70%, 하반기 30% 이내)

다. 투자계획 확인(공단 일선기관)

-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접수·검토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
- 해당 소재지에 개선대상 공정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, 지원된 이력이 있는지, 개선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
- 신청자격 비해당, 서류 미첨부, 지원불가 품목 신청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이 진행되거나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

< 보완 또는 반려 사항>

- ▶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점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신청한 경우
- ▶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서류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

라. 융자지원 결정심사(공단 일선기관)

- 신청서, 투자계획서(첨부서류 포함) 내용을 토대로 신청자격 등 적정 여부 확인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

마. 선금 신청(사업장→은행)

- 결정된 금액(결정통보서)의 80%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
 -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를 제출하여 대출약정 체결 후 선금 신청
 - ※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전액 지급 가능

바. 시설투자(사업장)

-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·설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
 - (개선 기간)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, 1회에 한하여(1개월) 연장 가능
 - ※ 단,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 결정 시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투자완료 기간을 준용함
 - (투자계획 변경) 모델, 수량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변경 신청·승인 필요(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불가)

사. 투자완료 확인요청(사업장→공단 일선기관)

- 기계·설비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서(관련 서류 포함)를 제출하여 확인 요청 실시
 -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고(소정 비용* 발생) 그 보고서를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
 - * (30인 미만) 없음, (30~49인) 30,000원/회, (50인 이상) 120,000원/회

아. 투자(개선)완료 확인(공단 일선기관)

-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후 투자확인서 발급
 - 사전에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기계·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·설비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지급 불가
 -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융자금 환수조치(참여제한 포함)가 될 수 있음
 - ※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

자. 은행 대출신청(사업장)

- 사업장은 주거래은행에 투자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(선금급 미신청 사업장)하거나 융자금 잔금 지급 신청

차. 융자금 대여(공단 본부)

- 투자완료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급
 -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
- ※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

카. 사후관리(공단 본부)

-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
 -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, 3년차까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
-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 품목을 적정히 유지·관리하지 않거나 융자금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금 환수조치

<융자금 지원결정 취소 사유>

-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 ②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(페이백 등)
-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
- ④ 융자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-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는 경우
 - 프레스 방호장치(예시)광전자센서)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
-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
- ⑦ 융자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거나,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은 경우
-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

※ (참고)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융자지원 취소 사유

- 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·지원을 받은 경우
- ▶ 보조·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
- ▶ 보조·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▶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
- ▶ 보조·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·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- ▶ 보조·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3. 제출서류

제출서류	단 계	융자금 신청	계획 변경	투자완료 확인 요청	사후 기술지도
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	●		●	필요시
산재완납증명원 1부 (발행 후 15일 이내)		●		●	
대출예정확인서		●			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발행 후 15일 이내)		●		●	
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		●			
②융자금 지원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	●			
③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		●			
안전인증·자율확인신고 서류 1부 (안전인증품을 도입 하는 경우에 한함)		●		●	
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		●			
관련 사진 (설치예정 및 설치완료)		●		●	
④견적서 1부 (제작·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)		●	●		
신상품설명서(카다록) 또는 외관도면, 설계근거 자료 등		●	●		
⑤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1)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, 실거래금액 자료 등 2)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		●	●		
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통보서 (안전동행지원사업 자부담금 연계사업장만 해당)		●			
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	신청서	●			
	보고서			●	
설비구매·설치 계약서				●	
전자세금계산서·거래명세서				●	
⑦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					●

①②③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시(클린사업 홈페이지)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에 따라 같음

④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(옵션사양 기재 필요) 제출, 제작·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

⑤ 개선하고자 하는 설비·시설의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

- (양산품) 전자세금계산서·거래명세서·매매계약서 등 동일모델 2건 이상

- (공사품)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 제출(공사원가계산 수수료는 지원설비 투자비용 2% 이내 견적금액 포함가능)

⑥ 사업신청 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서 제출, 투자완료 시 컨설팅 보고서 제출

* 신청서 양식은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자료실 참조

⑦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융자금 사용 여부 등 검증

■ 우선선정 점수 배점

선 정 항 목	점수	비 고
①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거나 취약한 업종 • 건설업(대업종기준) ⇒ <u>20점</u> * 건설관련 소업종(40001~40010), 건설업본사 소업종(90515) 포함 • 건설업, 제조업을 제외한 전 업종(대업종기준) ⇒ <u>15점</u>	최대 20점	※ 업종 기준 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3항 및 동법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시(제2022-82호) 산재업종에 따름
②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 • 두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⇒ <u>20점</u>	20점	※ '24년도 사업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
③ 시설 및 장비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• 고용노동부·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·점검 및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⇒ <u>10점</u>	10점	※ 감독·점검 및 기술지원결과 보고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
④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•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이 신청한 경우 ⇒ <u>10점</u>	10점	※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내 용자금 신청 시 점수 부여
⑤ 소액 용자 신청사업장 • 3천만원 미만 신청(용자신청금액 기준) ⇒ <u>20점</u>	20점	※ 용자 신청금액 기준
⑥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•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경우 ⇒ <u>5점</u> *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상생협력 지원사업장 제외	5점	※ 접수일 기준 최근 확정통계 상시근로자수 적용
⑦ 고용증가 사업장 • 신청 전 1년 근로자수 비교	5점	※ 접수일 기준 전년 대비 확정 통계 상시 근로자수 기준
⑧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• 해당 근로자 1명당 ⇒ <u>1점</u> (최대 5명, 5점까지 인정)	최대 5점	※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※ 근로계약서,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제출하는 경우 인정
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•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⇒ <u>5점</u> * ①노사문화 우수(대상)기업, ②NCS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, ③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기업, ④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, ⑤청년친화강소기업	5점	※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하고, 중복 해당 시 합산하지 않음
계	100점	

※ 사업장간 우선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 순번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금 지원결정 불가(단,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 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제외)

※ '24년 용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·결정 불가

※ '24년 사업연도 중 정부정책 등 반영 과정에서 우선선정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(변동시 재안내)